

제 468 호

1974.11.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95 호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인수당지급조례 3

◎ 규 칙

제 1411 호 : 서울특별시부녀보호지도소조직개정규칙 5

제 1412 호 :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자도소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규칙 6

제 1413 호 : 서울특별시한강안전관리대책제 7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관리규정

제 39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입조례시행규정개정규정 9

◎ 고 사

제 160 호 : 74년도제 4 회세입세출수가정정역산고시 1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72 호 : 도시계획시설 (전기 공급설비) 추가결정 및 지적승인	12
제 173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2
제 174 호 : 서울도시계획 (용도지역 · 운동장 · 공원) 지적승인	13

◎ 공 고

제 243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일부변경및환지예정지일부변경 공람광고	14
제 244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기간연기에 따른 공람광고	14
제 245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예정지지정일부 변경광고	15
제 246 호 : 직인개각광고	16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구 자 관 인

197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조례제 895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이하 " 영 " 이라 한다)

제 9 조 제 5 항, 제 10 조 제 2 항 및 별표 4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할 세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급액) ①영 제 5 조, 제 7 조,

제 8 조 본문 및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영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가산액은 각각 영에서 정한 지급상한액을 그 지급액으로 한다.

②영 제 8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공무원의 조정수당 지급액은 별표 1 에 의한다.

제 3 조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지하철 도시업소속공무원으로서 직급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조정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별표 2 와 같다.

제 4 조 (지급방법) 영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방법은 영 제 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7월 1일 부터 적용하고,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시업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정수당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1969.7.3 서울특별시 조례 제 593 호 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외무직 공무원 조정수당 지급구분

구 분	2 급	3 급 갑 류	3 급 을 류	비 고
월 수 당 액	50,000 원	40,000 원	30,000 원	

별표 2 지하철도사업소속 공무원으로서 직설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조정수당 지급대상

현업기관별	지 급 대 상
지하철자재창고	관리장, 사무원, 참고원, 경비원
지 하 철 역	역장, 조역, 사무원, 지도역무원, 역무원, 구내원 여객수
지하철운전사령실	사령장, 운전사령주임, 운전사령원
지하철승무관리소	소장, 선임지도운전기사, 사무원, 지도차장, 차장 지도운전기사, 운전기사, 운용원
지 하 철 공 무 소	소장, 보심조역, 사무원, 영선원, 기술원, 기동원, 선로반장, 조기원, 선로원, 선로수
지하철차량공작소	소장, 검수조역, 기공조역, 기술원, 검수원, 기공원, 사무원, 참고원, 정리수, 경비수
지하철전력사령실	사령장, 전력사령주임, 전력사령원
지 하 철 전 기 소	소장, 전기조역, 전기원, 조기원, 사무원, 전공 운전원
지하철신호보안소	소장, 신호보안사령주임, 신호보안조역, 신호보안 사령원, 신호보안원, 조기원, 보안수
지 하 철 통 신 소	소장, 통신사령주임, 통신조역, 통신사령원, 통신원 통신수

규 칙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 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197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11 호

서울특별시 부녀 보호
지도소 직제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부녀보호지도소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부녀보호지도소 직제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부녀보호지도소 (이하 "보호지도소"라 한다)의 조직과 관장할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장) ① 지도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소내입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3 조 (사무장) ① 보호지도소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주

사로 보한다.

② 사무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소별 관장 사무) 보호지도소의 관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부부녀보호지도소 : 윤락여성 및 윤락의 우려가 있는 부녀의 수용보호, 건강관리, 교양성원지도 및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기술교육의 실시

2. 남부부녀보호지도소 :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생활대백없이 부양하는 부녀의 수용보호, 건강관리, 능력배양에 필요한 단순작업 및 생활교육의 실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1972.6.23 서울특별시규칙제 1223호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974년 11월 20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412 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용대상) (1)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 (이하 「보호지도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우여성으로서 보호지도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상파악결과 수용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용한다.

1. 경찰 기타 관계기관이 보호의뢰하는 불우여성
2. 수용보호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입소를 자진희망하는 요보호 여성
3. 무의무탁한 부랑부녀
4. 기타 윤락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를 요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전항의 신상파악은 상담에 의한다.

제 3 조 (입소절차)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보호가 결정된 자는 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 (질병의 진료) ①소장은 보호지도소 입소자에 대하여는 전원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진결과 법정전염병의 보유자는 격리치료하고 성병 기타 전염성이 약한 질병 및 경미한 질병 보유자에 대하여는 보호지도소내에 설치된 치료소에서 치료하되 증상에 따라 시립병원 또는 다른 치료기관의 치료를 받게 한다.

제 5 조 (퇴소) 소장은 재소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하게 한다.

<p>1. 친권자가 인계를 요구하는 자</p> <p>2. 자활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p>	<p>(2)기술교육의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소정시험의 실시결과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한다.</p>
<p>3. 불구, 중질병, 정신이상자 및 임신 3개월 이상의 자로서 소내생활이 곤란한 자 중에서 적격시설에 이송을 요하는 자</p>	<p>제 8 조 (취업알선) 소장은 제조자중 자취득 기타 자활능력이 갖추어진자에 대하여는 직업을 알선한다.</p>
<p>4. 결혼 또는 취업하게 된 자</p> <p>5. 기타 수송보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성병치료중에는 퇴소하게 할 수 없다.</p>	<p>제 9 조 (일부종지급) 제조자의 생활용품 및 교육용품은 일정 보호지도소에서 지급한다.</p>
<p>제 6 조 (일반교육) 소장은 제조자에게 생활지도외에 문자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위생 기타 일반 교양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p>	<p>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1972.8.11 서울특별시규칙 제 1237 호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p>제 7 조 (기술교육) ①전조의 일반교육 이외에 제조자의 자활능력 개발을 위하여 제조자의 소질 및 희망에 따라 다음의 기술교육을 실시한다.</p>	<p>서울특별시 건강안전관리대책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홍 1974.11.20</p>
<p>1. 이 용 2. 미 우</p> <p>3. 양 채 4. 편 글</p> <p>5. 수예 및 조화</p> <p>6. 가사보조원</p> <p>7. 기타 노동수급이 용이한 직종</p>	<p>◎서울특별시규칙 제 1413 호 서울특별시 건강안전관리대책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p>

한강안전관리대 (이하 "관리대" 라 한다) 의 조직과 계별분장사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직 및 사무분장) (1) 관리대에 관리대, 운영계 및 지역별지대 (이하 "지대" 라 한다) 를 두고 관리계장 운영계장 및 지대장은 별경직(4간 또는 4울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2) 계별 및 지대와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 리 계

- 가. 인사, 복무 및 급여
- 나. 문서관인 및 보안
- 다. 재회예산 및 회계
- 라. 장비 및 시설의 관리유지
- 마.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 영 계

- 가. 도강수단의 연구 및 개발
- 나. 장비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교육 및 도강
- 라. 하천순찰에 관한사항

3. 지 대

- 가. 층무계획훈련 (울지연습훈련) 에 따른 시민도강훈련 실시
- 나. 긴급도강시설의 관리운영
- 다. 소속지대원의 교육 및 훈련
- 라. 관할구역의 하상관리

제 3 조 (지대의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지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 (직무대행) 관리대장이 유고시엔 관리계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규칙은 1974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지대의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표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1. 마포지대	영등포구 당산동 7 가 5	서울대교 하류측에서 한강하류서울시경기도계간 한강유역
2. 육산지대	관악구 봉자동 129	제 3 한강교 하류와 서울대교 상류간 한강유역
3. 삼동지대	성동구 자양동	한강상류서울시 경기도계와 제 3 한강교 상류간 한강유역

규 정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 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4. 11. 20.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장

◎서울특별시지하철운수사업
관리규정제 3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
시행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 조중 "정기승차권" 다음에
" (보통정기승차권 제외) " 을 삽입
한다.

제48 조 제1 호 가목에 "미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군 인 용

· 앞 면 ·

지하철승차권
○ ○ 역에서 승차
서울역앞 - 정랑리
운임 20 원
3.0
5.7

· 뒷 면 ·

1	2	3	4	5	6
21번 창구					
○	○	역 발매			

제48 조 제1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연락왕복승차권

(1) 대 인 용

· 앞 면 ·

지하철연락왕복승차권	
인천 - 시청앞	시청앞 - 인천
도중하차진도무효	운임 240 원
	통용기간 2 일

“ 뒷 면 ”

1	2	3	4	5	6	1	2	3	4	5	6
(2) 번 창 구						○○역 발매					

(2) 소 아 용

“ 앞 면 ”

지 하 철 연 락 왕 복 승 차 권

인 천 - 시 청 앞 시 청 앞 - 민 천

운 임 120 원

도 통 하 차 무 호 통 용 기 간 2 일

“ 뒷면 ” 은 대 인 용 과 같 음 .

제 48 조 제 2 호 가 목 “ 2 ” 중 수
 “ 2 ” 를 삭 제 하 고 수 “ 3 ” 을
 “ 2 ” 로 하 며 , 동 호 나 복 을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나. 통 학 정 기 승 차 권 의 서 식 과 동
 일 하 되 통 학 정 기 승 차 권 을 보 통 이
 정 기 승 차 권 으 로 하 고 학 교 란

“ 락 ” 및 “ 뒷 면 ” 제 2 호 중 “ 가 ”
 “ 다 ” 를 삭 제 하 고 발 착 역 을 서 울
 역 앞 - 청 량 리 로 한 다 .

부 칙

이 규 정 은 공 보 한 날 으 로 시 행 한 다 .

고 시

예산율 지방자치법 제 141 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160 호

1974 년도까지 4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고시

1974 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제 4 회 세입세출추가경정

1974.10.30

서울특별시장 구 장 훈

- 다 음 -

회 계 별	예 산 액
총 계	102,273,813 원
일반회계	64,916,806 "
특별회계	37,357,007 "
주택비특별회계	3,871,303 "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6,205,088 "
지하철건설사업비 특별회계	5,754,181 "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513,137 "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791,939 "
유로도로비 특별회계	697,053 "
시민회관비 특별회계	1,238,469 "
재해구호사업비 특별회계	85,684 "
우수사업 특별회계	1,589,801 "
수도사업 특별회계	43,829,277 "
지하철우수사업 특별회계	2,781,675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2 호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추가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6 호 (73.7.7)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별정소) 추가결정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1.16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당 초	추 가	합 계	
전기공급설비	성동구신당동 217-6	435	1,168	1,603	별 정 소

별첨: 도면표시 참조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성동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3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1.20
서울특별시장

가. 시 설 조 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 장	성북구 하월곡동 16-1 부근	4,09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성북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4 호

서울 도시 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공원)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제 234 호 (74.9.24)로
일부 변경결정 고시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도시계획 (상업지역, 운동
장, 공원)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
획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동출자소, 원호출자
소 시범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게 한다.

첨부 1. 도시계획지적승인조서 (도면표
시와 같음)

2. 지적고시도면 (도면생략)

1974.11.20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단위 : ㎡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상업지역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245,443	

나.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지적승인조서

단위 : ㎡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부리도운동장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내 (삼전동)	408,800	부리도공원을 운동 장으로 조성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다. 공원지적승인조서

단위 : ㎡

구 분	공원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잠실공원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301,306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43 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일부변경및
환지에정지일부변경공람공고

1.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
지에정지에 대하여 일부사업변경
(공원및 가로변경)및 일부 환
지에정지를 변경하고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제 12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과 동법제 47 조,
제 55 조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2. 일부사업계획 및 환지에정지
변경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제
획국 구획정리 1 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서류송달은 별도 사업변경 및
환지에정지 변경에 관련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한것이나 수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공원변경조서 : 별첨
5. 가로조서 : 별첨

1974.11.2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44 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연기에따른공람공고

1. 당시가 시행하는 도봉, 창동, 역촌
정인, 청량,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
업의 사업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기
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
간 공람공고한다.
2. 사업기간연기에 따른 관계서류는
당시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에 비치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통지는 따로 하지 아니하고
이 공고로 가름한다.

1974.11.21

서울특별시장

지 구 명	연 기 할 면 적	준 공 예 정 일	연 기 준 공 일	비 고
도 봉	812,405 평	74.12.31	76.12.31	2 년
창 동	838,704 "	"	"	"
역 촌	1,334,025 "	"	"	"
경 인	2,212,373 "	"	"	"
신 당	130,000 "	"	"	"
청 량	332,000 "	"	"	"
영 동	9,064,000 "	"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5 호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
지예정지 지정일부 변경공고

1. 서울특별시 신림, 신림수가, 시흥
김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한 환경계정지
계획을 변경코사 서울특별시
공고 제 196 호 (74.9.27) 로
공람공고한 바 있는 일부 토
지에 대해서 환지예정지 지정
을 별첨 조서 및 도면과 같
이 일부 변경하고 토지구획정
리 사업법 제 56 조 및 해당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
례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토
지의 사용수익은 공고일로 부

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한다.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환지를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공사완료
및 다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
터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서 및 변
경도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와 관할구청 시민공사
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아게 한다.
첨부 :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서 및
변경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와
관할구청 시민공사실에 미
치)

1974. 11. 21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46 호

직인개각공고

영등포구 구로3동장 직인이 마멸되어 개각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함.

1974.11.

서울특별시장

개각공인사용개시일 74. 11.

(인영)

직인

제인



사령

◎ 1974.11.20

서대문구 지방행정서

김용웅

시정개발담당관실 파견근무를 명함 (74.11.20-75.5.20)

◎ 1974.11.21

성북구 지방행정사 이경주 지방공무원법 제 59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회계과 지방행정사 신우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성북구 지방행정사 박유훈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성북보건소 지방행정사 이희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사 강종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사 박사원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사 이호영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박수윤	도봉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이홍두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이영림	마포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이보현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함동석	성북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신동수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남태현	성북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백광린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조병준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정부성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김추기	성북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이영진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안재희	성북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신국현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신태석	도봉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최순진
도しが스사업소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송기환	관악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김성복
도しが스사업소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이윤철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한광영
도しが스사업소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이현희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김성완
도しが스사업소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구정희	성북구 지방행정 서사무소 근무를 명함.	윤우병
종로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건축과 근무불 명함.	지방건축 기사보	홍정길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함.
도 봉 구 고층건설진단본부 파견근무 (75.1.30 까지) 불 명함.	지방건축 기사보	최정일	양서출장소 근무불 명함. 도 봉 구 지방건축 기사보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① 1974.11.22	지방토목 기사	장기순	동대문구 근무불 명함. 성 북 구 지방건축 기사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도 봉 구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제 66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토목 기사	장기순	성동구 근무불 명함. 서대문구 지방건축 기사
① 1974.11.25	지방토목 기사보	전진영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도 수원지사무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토목 기사보	김진식	영동출장소 근무불 명함. 용 산 구 지방건축 기사보
순찰담당관실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토목 기사보	김진식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① 1974.11.26	지방건축 기사	김현식	관악구 근무불 명함.
주택건설과 부직을 명함.	지방건축 기사	김현식	은평출장소 지방건축 기사 지방공무원법제 69조 1.2호의
시대문구 근무불 명함.	지방건축 기사	최용수	규정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함. 도봉구 근무불 명함.
죽구보건소 가축위생시험소 종로구	지방건축 기사	오세호	관악구 지방건축 기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도 용 구 지방건축
 나 영 근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상북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원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관 약 구 지방건축
 사 임 환 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
 관 약 구 지방건축
 기 사 보
 김 금 신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
 관 약 구 지방건축
 기 원 보 오 세 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원 보 고 동 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
 성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원 보 박 용 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
 성북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
 도동구보건소 지방보건
 기 사 보 이 세 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

서울특별시장